



9 규칙부 보고

제106회기 규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이상협
서 기 강전우

1. 조직

- 1) 임 원 : 부장 이상협, 서기 강전우, 회계 지성환, 총무 이철우
- 2) 실행위원 : 지석천 최준환 박춘근 정중헌 유장춘 양용두 김태영 조평제 김홍표 양정택 이재호 전상호 이종문 맹연환 오윤택 박권익
- 3) 부 원 : 박권익 송봉선 윤남철 유금준 조상용 임병재 김인희 최부건 이효원 안병삼 양영규 지문태 임권묵 손진영 전정림 홍승철 류태철 류세희 이성수 서문환 허 장 송영의 정해영 서보천 방종인 이정호 한명대 김오경 이명환 이경구 김진호 심옥섭 박진석 김용주 임영섭 이성근 노호곤 김홍기 김성섭 하종성 이형린 윤병철 김선의 김형수 조상구 김영훈 설진욱 육수한 황선창 정영기 김영훈 이준욱 김성수 장창수 박상욱 강재승 이해찬 강권 백성권 노도영 고일봉 문금희 양성완 이양수

2. 회의

1) 전체회의

- ☞ 일 시 : 2022. 7. 7(목) 10: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서기 보선 보고의 건은 규칙 3장 제9조 2항 9호에 따라 규칙부 임원회에서 강전우 목사를 서기로 보선함을 보고하다
- ②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 및 제107회 총회 보고사항 검토의 건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가. 총회 규칙부 수임사항 처리 결과 및 규칙, 정관 개정 심의 안을 보고하다.

a. 총회 선거규정 개정

-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로 통지(규칙부가 심의한 대로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요청)

b. 총회 규칙 개정안(105회 규칙부 청원안) 심의

- 개정안대로 받기로 하다. 제11조 1항 실행위원회 조직- 교육개발원 이사장-신설기관 삽입, 제28조 2. 총회 안건 제출은 본 규칙 제5조의 임원회 제9조의 상비부 제11조의 위원회 제13조의 총회소속기관 그리고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노회가 제출하는 현의안은 노회 결의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노회에서 임원

회에 현의안 상정을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의 개정안을 받기로 하다.

c. 감사규정 개정 심의

- 정치부에서 현행대로 하도록 상정하였으므로 심의하지 않기로 함.

d.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총회규칙(군목부 관련) 개정안 작성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목부는 군목후원 및 군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력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규칙 개정

e. 분쟁노회 수습매뉴얼 심의

- 9항 '만 2년'을 '6개월'로 개정되는 것은 총회 회기상 불가함으로 '1년'으로 재개정하는 것으로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에서는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가 3월 15일부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규칙부장 단독으로 제출한 것은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고, 규칙부 실행위원회 해당 청원 역시 참석인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므로 결의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한 것을 규칙부에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가 3월15일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장이 반려하므로 서기의 자격으로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및 표결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실행위원회 종료 후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3월15일 실행위원회 결의와 회의록 작성은 적법한 결의와 회의록임을 보고하고 확인하다.

f. 은급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

- 제22조 2항 개정안 외에는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 발송(제22조 2항 개정안은 자구가 모호하여 추후 수정하여 다시 보고)

g. 기독교신문사 정관 개정안 심의

- 제4장 18조 개정안 외에는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발송(제4장 18조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재개정 요청하기로 하다)

h.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 개정안 심의 후 결과 발송

i.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심의

- 개정안 심의 후 결과 발송(단, 총회 결의대로 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j. 대구노회 노회장 박승환 씨가 현의한 질의의 건

- 위임목사가 시무 중 폐당회 되었을 시 노회 임원직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
할 수 없음

- 위임목사가 노회 임원으로 봉사 중 폐당회 었을 시 임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음

③ 제107회 총회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가. 총회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상비부)</p> <p>3. 각 부원의 임무</p> <p>12) 군목부는 군목 후원 및 군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p>	<p>제9조(상비부)</p> <p>3. 각 부원의 임무</p> <p>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 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p>	수정
<p>제7조(임무)</p> <p>3. 서 기</p> <p>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p>	<p>제7조(임무)</p> <p>3. 서 기</p> <p>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p>	수정
<p>제9조(상비부)</p> <p>3. 각 부원의 임무</p> <p>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p>	<p>제9조(상비부)</p> <p>3. 각 부원의 임무</p> <p>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p>	삭제

나. 감사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감사의 구분)</p> <p>3.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제3조(감사의 구분)</p> <p>3. 특별 감사는 감사부 3분의2 결의로 총회장에게 제의하여 총회장의 허락으로 실시한다.</p>	수정
<p>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 회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 회기로 하되 직전회기 중 누락된 기간을 감사부가 필요로 할 시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감사할 수 있다.</p>	수정
<p>부 칙</p> <p>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 제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p>	<p>부 칙</p> <p>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감사부에서 제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p>	수정

다. 총회의 규정과 절차를 알리는 규칙 세미나 청원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1000만원하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의

(1) 제1차 실행위원회의

☞ 일 시 : 2022. 2. 8(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선거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을 축조심의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의하다.
 - 가. 제2조(목적) 현행대로(교육개발원 이사장 및 이사는 하나바이블 개발을 위한 후원이사임으로)
 - 나. 제9조(공통사항) 1항 개정안대로, 6항 개정안대로, 7항 개정안대로
 - 다. 제10조 개정안대로
 - 라. 제11조 1항 개정안대로, 3항 현행대로
 - 마. 제14조 개정안대로
 - 바. 제15조 1항, 2항, 8항 개정안대로
 - 사. 제17조 1항 개정안대로
 - 아. 제18조 1항, 2항 개정안대로, 3항3.공명선거서약서 4(번호수정)
 - 자. 제22조 개정안대로
 - 차. 제23조 개정안대로
 - 카. 제24조 현행대로(규칙 2장 6조 4항과 충돌)
 - 타. 제26조 현행대로(규칙 26조 절충형 제비뽑기와 충돌)
 - 파. 제27조(후보자홍보) 현행대로
 - 하. 제28조 개정안대로
 - A. 제28조 번호수정 ->개정안 번호 27조->제28조로 자구수정
 - B.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제28조 ->29조로 수정
 - C. 제29조(사전선거운동금지) 개정안대로
 - D. 제30조 1항, 5항, 6항 개정안대로
 - E. 부칙 현행대로 결의하다
 상기와 같이 개정안과 현행대로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2) 제2차 실행위원회의

☞ 일 시 : 2022. 10. 2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선거관리규정은 규칙부가 심의한대로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11명 중 찬성 4명, 반대3명, 기권 4명)
- ② 총회 규칙 개정안 제11조 1항 실행위원회 조직 - 교육개발원이사장 - 신설기관 삽입, 제28조 2. 총회 안건 제출은 본 규칙 제5조의 임원회 제9조의 상비부 제11조의 위원회 제13조의 총회소속 기관 그리고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노회가 제출하는 현의안은 노회 결의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노회에서 임원회에 현의안 상정을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필히 첨부 하여야 한다. - 의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감사규정 개정의 건은 정치부에서 현행대로 하도록 상정하였으므로 심의하지 않기로 하다.



- ④ 총회규칙 개정 건(군목부) -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변경하고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 의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 9항 만2년을 6개월로의 개정의 건은 - 6개월은 총회 회기상 불가함으로 1년으로 재개정 하도록 하다.
- ⑥ 은급재단 정관 개정의 건
 - 가. 제6조 1항 ‘임원은 총회규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항 ‘이사는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자로 감사는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 - 의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나. 제22조 2항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은급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 개정의 건은 자구가 모호함으로 명확하게 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다. 제31조(회계감사) ‘하면’ -> ‘하며로’의 자구 수정을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라. 제34조(정관변경)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에 보고한다’ - 의 개정안을 받기로 하다.
 - 마. 제36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의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⑦ 기독교신문사 정관
 - 가. 제4장 임원의 자격 및 임무 제15조, 16조, 17조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나. 제4장 18조 개정안은 기각하기로 하다(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재개정 요청하기로 하다).
 - 다. 제4장 19조, 20조는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라. 제5장 25조, 26조, 27조를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마. 부칙1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⑧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의 건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⑨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은 받기로 하고 총회결의대로 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하다.
- ⑩ 대구노회 노회장 박승환 씨가 현의한 질의의 건은
 - 가. 위임목사가 시무 중 폐 당회 되었을 시 노회의 임원직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고 결의하다.
 - 나. 위임목사가 노회 임원으로 봉사 중 폐당회 되었을 시 임원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 2021. 10. 14(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상비부 실행위원은 상비부 임원 외에 선정하는 것으로, 실행위원의 숫자는 규칙 9조 2항의 9에 의거하여 전체부원(전체의 수는 임원을 포함)의 1/4로 한다.
- ② 위 1항에 대한 결의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기로 하다.
- ③ 실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강전우, 지천석, 최준환, 박춘근, 정중현, 유장춘, 양용두, 김태영, 조평제, 김홍표, 양정택, 이

재호, 전상호, 이종문, 맹영환, 오운택, 박권익, 송봉선, 윤남철, 유금준(20명)

- ④ 실행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다(이상협, 이양수, 지성환, 이철우, 강전우, 지천석, 최준환).
-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6회 총회에서 보고한 총회선거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에서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공포 발생하기로 하였는바 규칙부가 먼저 심의 하도록 조속히 보내 줄 것을 공문 요청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2. 2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선거규정 부칙 1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한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인준하거나 거부하거나의 의결만 하여 심의를 요청하여 주기를 임원회에 공문 발송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22. 6. 2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의 사임(3/15)으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2항에 따라 서기는 강전우 목사로 보선하기로 하다.
- ② 제106회 총회결의 이행 요청과 분쟁노회 수습매뉴얼 심의 보고 관련 건에 대한 사안은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가 3월 15일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장이 반려하므로, 서기의 자격으로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및 표결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실행위원회 종료 후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3월 15일 실행위원회 결의와 보고서 작성은 적법한 결의와 보고서임을 확인하다.
- ③ 감사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니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하다.
 - 가. 제3조(감사의 구분) '3. 특별감사는 감사부 3분의2 결의로 총회장에게 제의하여 총회장의 허락으로 실시한다.'
 - 나. 제11조(대상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회기와 직전회기 중 누락된 기간을 감사부가 필요로 할 시 감사할 수 있다.'
 - 다. 부칙 '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감사부에서 제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총회규칙 개정안을 논의하니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하다.
 - 가. 제2장 제7조 3항 2)에서 '15일 이내 현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 수정하기로 하다.
 - 나. 제3장 제9조 3항 4)에서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현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하기로 한다.)'는 삭제하기로 하다.



3. 수임사항 처리결과

1) 총회 선거규정 개정

-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로 통지(규칙부가 심의한대로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요청)

2)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총회규칙(군목부 관련) 개정안 작성

현행	개정안	심의안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목부는 군목 후원 및 군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개정안대로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규칙개정)

3) 분쟁노회 수습매뉴얼 심의

- 9항 '만 2년'을 '6개월'로 개정되는 것은 총회 회기상 불가함으로 '1년'으로 재개정 하는 것으로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함.

4) 은급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

- 제22조 2항 개정안 외에는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 발송(제22조 2항 개정안은 자구가 모호하여 추후 수정하여 다시 보고)

현행	개정안	심의안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은급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현행대로 (자구가 모호함으로 명확하게 하여 다시 심의)

5) 기독교신문사 정관 개정안 심의

- 제4장 18조 개정안 외에는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 발송(제4장 18조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재개정 요청하기로 하다).

현행	개정안	심의안
제18조 [주필 및 논설위원]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며, 논설위원 21인(3구도)으로 논단을 기고하고 주관하게 한다. 단, 논설위원 선임은 사장과 주필이 선임한다.	제18조 [주필 및 논설위원] 주필은 이사장이 발행인에게 보고하여 선임하며, 논설위원 21인(3구도)으로 논단을 기고하고 주관하게 한다. 단, 논설위원 선임은 이사장과 사장이 선임한다.	현행대로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재개정 요청)

6)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 발송

7)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심의

- 개정안대로 심의 후 결과 발송(단, 총회결의대로 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8) 대구노회 노회장 박승환 씨가 현의한 질의의 건

- (1) 위임목사가 시무 중 폐 당회 되었을 시 노회의 임원직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 - 할 수 없음
- (2) 위임목사가 노회 임원으로 봉사 중 폐당회 될 시 임원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음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규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 규칙개정

1) 군목부 군선교부로 명칭변경(제106회 총회 수입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u>군목부는 군목 후원 및 군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u>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u>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 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u>	수정

2) 상설사건에 대한 절차관련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임무) 3. 서 기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u>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u>	제7조(임무) 3. 서 기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u>이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기로 한다.)</u>	수정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u>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기로 한다.)</u>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삭제

2. 감사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감사의 구분) 3.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3. 특별 감사는 감사부 3분의2 결의로 총회장에게 제의하여 총회장의 허락으로 실시한다.	수정
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 회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 회기로 하되 직전회기 중 누락된 기간을 감사부가 필요로 할 시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감사할 수 있다.	수정
부 칙 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 제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감사부에서 제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수정

3. 규칙세미나 진행의 건

규칙세미나를 개최하여 총회의 규정과 절차를 알리는 세미나를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타 교단에서도 총대와 노회원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법적 함양을 넓히기에 유익하오니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재정청원 500만원)

2022년 9월

규 칙 부
부 장 이 상 협
서 기 강 전 우